학생활동에 따른 보험 규정

2003. 06. 27. 최초제정
2005. 07. 01. 부분개정
2007. 06. 30. 부분개정
2008. 02. 26. 부분개정
2009. 06. 30. 부분개정
2010. 08. 01. 부분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17. 05. 01. 부분개정
2020. 01. 01. 부분개정
2021. 11. 01.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과 M・T(O・T), 졸업(수학)여행, 교내·외 행사, 봉사활동, 동아리행사 및 현장(임상)실습시 학생들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및 학생실습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과 지도교수의 인솔 부담을 해소하고 신체적 상해에 대한 공상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보험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내·외 행사 활동 및 현장(임상)실습을 시행하는 학생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적용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내행사 : 체육대회(학과, 반), 축제, 학술제, 봉사활동 등 이에 준하는 학생활동 행사(학생·취업처에 학생행사 및 게시신고서 제출)<개정 2017.05.01., 2020.01.01.>
2. 교외행사 : M・T(O・T), 졸업(수학)여행, 학술조사, 유적답사, 산업시찰, 봉사활동, 수련회(연수), 견학 등 이에 준하는 학생활동 행사
3. 기타 신입생환영회, 대면식, 졸업생환송회, 사은회 등 이에 준하는 각 종 행사
4. 현장(임상)실습 활동 기간 중에 있는 학생

제3조(시행방법) 이 내규에 따른 시행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행사 및 게시신고서를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2. 학과 전체M・T(O・T)는 연1회로 하며, 현장(임상)실습 활동은 예외로 한다.
3. 삭제
4. 행사참여 학생이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가. 사고사실 확인서(본인)
   나. 재학증명서
   다.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라. 치료비 영수증(전체)
   마. 본인통장 사본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학점 취득을 위한 현장(임상) 실습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담당부서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1.11.01.>
9. 인턴십 파견은 학생·취업처에서 시행한다.<개정 2020.01.01.>

제4조(참고사항) ①경영자배상 책임보험 안내 : 경영자배상 책임보험 보상이란 대학 경영과 관련하여 대학시설이나 대학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대학 업무의 수행으로 학생 및 제3자에 생긴 우연한 신체 손행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며, 교내·외 치료비 담보 추가특별 약관에 의거 대학 교내·외에서 생긴 학생의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특히 약정된 조항을 제외하고) 귀교에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가입 범위 안에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② 대학경영자 특별 약관 : 대학경영자 특별약관에서는 대학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대학시설 및 대학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